

[별표 2]

주야간보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2.01.01.)

○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

구 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3시간이상 ~ 6시간 미만	36,950	34,210	31,580	30,140	28,700	28,700
6시간이상 ~ 8시간 미만	49,530	45,880	42,350	40,910	39,450	39,450
8시간이상 ~ 10시간 미만	61,600	57,070	52,690	51,250	49,790	49,790
10시간이상 ~ 12시간 미만	67,870	62,870	58,080	56,620	55,180	49,790
12시간 이상	72,780	67,420	62,280	60,840	59,400	49,790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022년 1월	1,672,700	1,486,800	1,350,800	1,244,900	1,068,500	597,6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(월별보험료액이 보험료 순위 0~25% 이하에 해당 되는 등)에는 본인일부 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.	6%
월별보험료액이 보험료 순위 25%초과 ~50%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인일부 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.	9%

○ 비급여 항목(원)

중식비(평일)	간식비(평일)	석식비(평일)	중식비(토요일)	간식비(토요일)
1,500	1,500(일2회)	2,500	2,000	1,000(일1회)

※비급여 항목은 물품상승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